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곽 기 성

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 언론학

2005년 12월 초, 전 세계의 언론은 호주에서 발생한 인종 폭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언론 역시 분노한 호주인들의 표정을 담은 로이터 사진과 함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지만 인종 갈등이나 대립이 전무한 평화로운 나라로 인식되어 온 호주에서의 폭동 소식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세계 언론이 이례적인 호주의 인종 폭동 사태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900년대 초 호주 연방이 수립된 이래 1960년대까지 호주가 국가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시대착오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동은 금방 진압되었지만, 1년여가 지난 금년 3월, 호주 방송 규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는 당시 폭동기간 동안 한 특정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청취자들로 하여금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폭동을 조장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언론의 규제 기구를 간단히 소개하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심의 여파를 다룬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드러난 호주 방송 규제에의 기본 틀, 즉 자율규제의 문제점과 규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I. 호주의 언론 규제기구

호주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형태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매체의 관련사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이다(표1 참조). 방송의 경우, 두 개의 공영 방송사(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각기 독자적인 자체 현장에 의한 개별적 자율규제를 행하고, 그 밖의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유료방송 등 상업 방송사들의 자율규제는 같은 유형의 방송사별로 행해지는 집단적인 형태이다. 방송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방송은 자체적으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이를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통신 방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며, 또한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조사해야 한다.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청자나 청취자는 물론, 방송사도 의뢰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그리고 신문) 간의 교차소유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호주 방송 소유구조의 특성상, 호주 텔레비전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는 각기 다른 자율기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율 규정 역시 각기 다르다. 텔레비전 자율기구는 FreeTV이며, 라디오 자율기구는 상업 라디오 방송 협회(CRA: Commercial Radio

Australia)이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는 호주 프레스 평의회가 정하는 실천강령에 준한다. 한국의 경우 인쇄매체와 방송 내용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구가 따로 없이 각 규제 기구가 불만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호주의 언론 자율기구 및 규제/심의 기구〉

	자 율 기 구	심의/규제 기구
신문, 잡지	Press Council	Press Council (프레스 평의회)
방 송	텔레비전: FreeTV (상업 텔레비전 방송 협회) 라디오: CRA (Commercial Radio Australia) 유료 방송: ASTRA (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 Radio Association)	ACMA (통신 방송 위원회)
광 고		Advertising Standards Bureau(광고 협회)

1. 호주 프레스 평의회

(APC: Australian Press Council)

호주 프레스 평의회는 인쇄매체인 신문과 잡지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율단체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성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1976년 출범하였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언론의 취재, 보도 자유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의 알 자유'를 뜻한다. 언론의 책임과 도덕성은 당연히 독자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다. 프레스 평의회가 행하는 주요 기능은 독자들의 불만/불평 창구로서, 책임 있는 독립적인 언론 그리고 수준 높은 고질의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프레스 평의회는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 신문, 잡지, 인터넷 형태로 인쇄되는 내용에 대한 불평/불만 내용을 접수, 처리한다.
- 회원사들이 독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익을 위한 정보 전달을 저해하거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사법적, 상업적 사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집의 자유 등 언론 이슈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공청회나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이슈를 일반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프레스 평의회는 1976년 설립된 이래 주요 언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적지 않은 골목을 겪어왔다. 우선은 호주의 정통 언론사인 『페어팩스』(Fairfax)가 1982년에야 가입했고,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News Limited)는 1980년 탈퇴한 후 1987년 재가입했으며, 「지역신문협회」(Australian Suburban Newspaper Association) 역시 수차례에 걸쳐 탈퇴-재가입하는 등 회원사들이 유동적인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이런 유동적 현상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1987년 당시 기자들의 대변 기구인 「호주 기자협회」(AJA: 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가 프레스 평의회에서 탈퇴한 것이다. 1987년 총선을 앞두고 애덜레이드의 한 신문이 논설을 통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Liberal Party)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인 노동당(Labour Party) 정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프레스 평의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평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평의회 회장은 정부의 이런 처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임하였으며, 이 때 탈퇴한 기자협회는 현재까지도 프레스 평의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스 평

의회는 모든 신문, 잡지사들이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배제하고 있다. 즉 평의회의 원칙과 철학이 자사의 논조와 상이하고 언론 업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협회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

프레스 평의회는 회원사인 신문, 잡지사의 재정후원으로 운영되며, 이사회가 회원사로 대표되는 방송 자율기구인 FreeTV의 경우와는 달리, 평의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평의회 위원은 총 22인이며, 이 중 12명은 회원사를 대표하고 나머지 10명은 비 언론인이다. 이 외에 프리랜서 기자(3인), 편집인(2인) 그리고 언론인 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MEAA(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를 대표하는 1인이 더 포함된다. 회원사를 대표하는 12인은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 신문 등 모든 종류의 신문사를 대표한다. 비 언론인은 경력, 사회봉사도, 경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호주 8개 주의 각 주에서 최소한 한 명씩 선출되며 성별 측면에서 볼 때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비 언론인 10인 중 여성은 6명이다.

위원장은 과거에 언론직에 종사한 적이 없는 언론과는 무관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며 전통적으로 전직 대법원장 등 주로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이사장직을 수행해왔으나, 2000년 새로 부임한 신임 이사장 케니스 맥किन(Kenneth McKinnon)은 대학 부학장 출신으로 최초의 비 법조인 이사장이 되었다. 부 이사장은 이사회와 일반인 출신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다수의 일반인을 평의회의 주요 결정기구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잣대에 준하여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의회는 1996년 그동안 접수된 독자들의 불평, 불만을 바탕으로 신문, 잡지사의 실천강령적인 'Statement of Principles'의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실천강령은 신문, 잡지사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협회가 불만내용을 처리할 때 근거하여 적용하는 일반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 1) 허위 내용이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확치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 2) 기사화 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특정인을 명예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정정 혹은 사과기사를 발표해야 한다.
- 3) 독자의 사생활과 개개인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사생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이 사항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사화 할 수도 있다.
- 4) 정당치 못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정보는 공익의 절대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는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5)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조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실 기사와 의견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
 - 사실을 보도치 않거나, 거짓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왜곡해서는 안 된다.
 - 특정 광고주 등 상업적 이익이 기사 보도나 의견기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6) 신문과 잡지는 다양한 취향을 추구할 수 있으나, 그 취향이 독자에게 불쾌할 정도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 7) 특정 인종, 종교, 민족, 국가, 성, 장애인, 신체적 질병 그리고 결혼 유무와 특정 연령층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익의 관점에서 중대한 시안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수 있다.
- 8)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비난의 대상일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넌을 통하여 균형 있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
- 9) 프레스 평의회가 판결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신문이나 잡지사는 지면을 통해 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독자 불만 처리과정〉

독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사설, 삽화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특정 기사에 대한 불만은 호주 기자협회가 소속된 호주 언론, 예능, 예술 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산하의 사법 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맡고 있다. 특정 기사, 사설, 혹은 삽화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독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잡지사에 문제되는 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한 해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사가 출판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프레스 평의회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불평/불만의 전달 및 처리과정에서 프레스 평의회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과정이 손쉽고, 경제적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만 처리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불만을 전달하는 경우, 변호사는 처리과정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궁극적으로 해당 불만 내용을 다루는 사람은 최초 불만 신청자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인쇄매체에 대한 불만 건수는 당연히 잡지보다는 신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프레스 평의회가 구별하는 불만 내용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프레스 평의회에 접수된 불만은 그 내용에 따라 평의회 산하의 불만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불만위원회 임원에는 일반인이 반드시 포함된다. 불만위원회에서 검토된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기사를 실었던 신문사나 잡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사는 이에 이의가 없으면 이 사실을 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평의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시에는 사설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과 잡지에 대한 일종의 감시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레스 평의회 효과적 기능 수행

에 대한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평의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선 방송 감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프레스 평의회는 강령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방송 인가권과는 달리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규율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편집자나 발행인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평의회는 감시기구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평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쇄매체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규정상 평의회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매체는 이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서 야기되는 부수적인 번거로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신문사나 잡지사로서는 해당 이슈를 더욱 더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비치는 이미지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ACMA: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통신위원회(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통합하여 2005년 7월 출범한 기구로 방송, 인터넷, 무선 통신, 통신 분야를 규제한다. 호주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은 통신과 방송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스펙트럼을 탄력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융합에 따른 규제변화를 필연적으로 인정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해

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통합을 추진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2007년 현재 위원회 임원은 총 7인으로, 위원장 1인(상근), 부위원장 1인(상근) 그리고 5인의 평위원(1인: 상근, 4인: 비상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보면 방송 관련 2인, 통신 관련 2인, 경쟁위원회 출신 1인으로 다양하다.

ACMA의 방송 관련 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 스펙트럼 조정 및 관리
- 방송 인가권 행사
- 방송의 다양성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업 방송사의 소유 규제
- 특정 이슈에 대해 프로그램 기준 혹은 인가 조건 내용을 고안한다.
- 방송 종류별로 행해지는 자율 실천강령 내용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유도 개발

〈시청자/청취자 불만 접수 및 처리〉

시청자나 청취자가 특정 방송(ABC와 SBS 등 공영 방송도 포함)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해당 방송사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사의 답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ACMA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만 내용이 실천 강령에 관한 위반 사항일 때는 해당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제출하나, 실천 강령과 관련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만 내용을 ACMA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텔레비전 캡션
- 담배 광고
- 정치 광고
- 선거물

- 커뮤니티 라디오의 스폰서 공고
- 의약 광고
- 어린이 방송 규정, 호주 콘텐츠, 엔티 사이포닝(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방송법(11조)에 따라, ACMA는 모든 불만 안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가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고서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불만 제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표할 시에는 ACMA는 그 특정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사 보고서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 ACMA의 일반적 관행이다.

II. 2005년 12월 방송에 대한 불만 내용과 ACMA의 심의 결과

2005년 12월 11일 5,000여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크로놀라 해변가에 모여 중동계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런 상황은 다음날까지도 계속되었다. 이 난동 중에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난동은 곧 진압되었다. ACMA는 이 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만 신청자들은 2005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방송된 “Breakfast with Alan Jones”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폭력을 조장하고 특정 인종 출신(레바논 출신 및 중동계)을 비방하고 이들에 대한 반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사인 2GB에 공식적인 항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2GB의 답신이 불충분하다며 이를 다시 방송 규제 기구인 ACMA에 제출하였다. ACMA는 항의 내용을 1년여 넘게 검토하여 지난 3월초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제가 된 방송사는 2GB 채널의 상업방송사로, 소

유주는 Harbour Radio이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Breakfast with Alan Jones"라는 토크백(talkback) 프로그램으로,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데, 주로 청취자들이 전화통화로 호주 사회의 일상적인 제반 시사 이슈에 대해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논의도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알란 존스(Alan Jones)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 중 한 명으로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Jones는 이전에도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예를 들면 '1993년의 호주인'으로 원주민이 선정되자 이를 모독적이라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었고,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정치적 발언이 문제화되어 법정 소송을 당하기도 한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이다.

접수된 총 8개의 안건 중에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에서 적용되는 반 차별법(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 1992) 2조 8(1)(g)항은 '상업 방송사는 각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반 법에 위반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은 방송 허가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ACMA는 우선 반 차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 차별법 20(1)항은 '특정 인종에 대해 혐오감(반감), 경멸감, 심한 조롱의 대상으로 조장하는 것은 불법(unlawful)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대부분은 벌과금이 부과될 뿐 범법행위로 간주되진 않는다. 동 법은 민사상의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별 행위나 태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되는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별 행위나 태도가 차별 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신체적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사상 처벌을 추진할 경우 해당 주의 검찰 총장(State Attorney-General)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반 차별법 하에 민사상 처벌이 행해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ACMA는 이번에 접수된 안건들을 인가 조건 조항에 적용하여 심의하지 않았다.

ACMA의 심의과정 중 가장 근간을 이룬 기준은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상업 라디오 방송 협회)의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다. 1930년 출범한 상업 방송사 협회는 상업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기구로 2002년 기존의 FARB(Federation of Australian Radio Broadcasters)에서 CRA로 개명되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는 방송법이 정하는 인가조건에 준하며, 동시에 CRA가 자발적으로 만든 실천 강령에 따라 행해진다. 실천 강령의 내용은 방송 규제기구인 ACMA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령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현 강령은 라디오 방송사, ACMA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2년 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04년 9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금년(2007년) 말 공식적인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강령이 얼마나 자주 재검토될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ACMA는 필요시에는 공식적인 재검토 기간이 아니더라도 재검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CMA는 심의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상업 방송사 실천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프로그램 수칙 부분의 중상, 비방에 관한 1.3(a)항과, 인종 차별 방송을 금하는 1.3(e)항이 적용되었다. 실천 강령 1.3(a)항과 1.3(e)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a)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선동, 조장, 혹은 권장할 소지

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encourage or present for its own sake violence or brutality)

1.3(e) 연령, 민족,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증상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or perpetuate hatred against or vilify any person or group on the basis of age, ethnicity, nationality, race, gender, sexual preference, religion o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CMA가 접수한 총 불만 건은 8개였는데 이 가운데 3가지 항에 대해 일종의 '유죄'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5가지 항은 '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유죄 결정을 내린 3가지 내용과 ACMA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만사례 1.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폭력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쑥꾸러기들이 크로놀라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지겁 기차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CMA는 보통 청취자라면 위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폭력을 행하게끔 자극시키고, 폭력을 권장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고무하고,
- 폭력 사용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 질 수 있다.

ACMA 보고서는 레바논계 기차 승객들을 겁주기 위해 바이커족을 데려오자고 한 제안은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인들이 호주인들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갱 집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무기력 하다고 하는 다른 코멘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CMA가 보충자료로 제시한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이 경찰인 청취자가 보내온 편지를 진행자가 읽음)

진행자 : 이름을 밝히지 않아 달라는 한 경찰관이 보내온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경찰직에 몸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중동계 젊은이들은 호되게 버릇을 고쳐줘야만 말귀를 알아들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녀석들은 회초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찰로서는(강압적으로 진압하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으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순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중동계 녀석들은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몽둥이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녀석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정에 불러 나와서도 웃는 녀석들입니다.

즉, 바이커족 초대를 승인한다는 것은 폭력을 권장하고 따라서 폭력을 승인한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반 이유이다.

불만 사례 2. 2006년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썽꾸러기들이 크로놀라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지겁 기차로 도망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GB는 알란 존스의 코멘트가 몇몇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해명했다. 하지만 ACMA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인 예로 들며 피크닉 지역을 중동계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코멘트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진행자 : (청취자의 이메일을 읽음) 이곳 크로놀라에 사는 사람들은 중동계 사람들 때문에 이곳 피크닉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중동계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인 호주인 인명 구조대의 도움을 받죠. 제발 우리 미래의 호주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호주인'과 따로 분리해 지칭함으로써,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호주인'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CMA는 위의 방송 내용에서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명백히 특정 인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만사례 3. 2006년 12월 8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12월 8일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청취자 B와의 전화통화 내용)

청취자 B: 크로놀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듣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폭력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중동계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크로놀라의 문제 지역에 가 봤는데 중동계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고 그들을 겨냥한 적대적인 선동행위들을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이슈가 있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

진행자 : 글썄요. 경찰이 모든 걸 바로 잡고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을까요?

청취자 B : 그럴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 네. 하지만 BBC 우리 양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앵글 색슨계 청소년들이 부녀자를 성폭행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면성이라는 듣기 좋은 얘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사는 부모들이 보내는 서신물이 쇄도하는데, 이 중 카톨릭,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 앵글리칸(영국 성공회)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하는 입장은 이 사회는 모든 나라사람들의 이민을 환영하지만 정해진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킬 시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조건과 기준이 지금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 몫이 있다는 등의 완곡한 표현들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드니에 갱들이 있다는 것과 그 갱들이 모두가 특정 소수 민족 출신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시드니 전역에 걸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읽어드린 서신 내용에서도 이런 사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

한 청취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는 ‘앵글로 색슨계 젊은 이들이 서부 시드니에서 여성들을 강간하진 않는다’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듣기 좋은 ‘양면성’에 집착하지 말자며 청취자의 발언을 무시했다는 것이 ACMA의 판단이다. ACMA는 또한 위의 통화 내용 중 종교적인 요소와 이민자 사회의 수준이 언급됨으

로써 특정 인종과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부 시드니 지역에서 백인 여성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레바논계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ACMA는 상기 방송 내용이 그 강간 사건과 중동계 출신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그들의 반(反) 사회적인 성향을 분명히 연계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II. ACMA발표에 대한 각계의 반응

ACMA의 발표 직후 2GB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의 주 청취층은 이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쉽게 흔들리거나 자극받지 않는 55세 이상의 호주인이다. 또한 ACMA에 불만이 전달된 시기는 ABC-TV에서 알란 존스 프로그램 원고의 일부를 방송한 직후이다. 게다가 불만 신청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라며 ACMA의 심의 과정에서 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GB의 모회사인 머쿼리 라디오(Macquarie Radio Network) 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존 싱글톤(John Singleton)은 ACMA의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CMA가 취할 조치에 대해 하겠다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GB와 알란 존스의 명예는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지 않은가? 더 이상의 조치가 없길 바란다(cited in Bodey, 2007)”.

알란 존스 역시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은 폭동 당시 내가 읽었던 수많은 이메일 중 단지 3개의 이메일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그 이메일을 읽은 이유는 폭동에 분노한 청

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 내용을 내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단지 청취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토크백 쇼의 특성상 몇몇 화난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대독했을 뿐이다. 폭동기간 동안 나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고, 청취자들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신신당부했다 (cited in *ABC Media Watch*, 16 April 2007)".

호주 프레스 평의회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데이빗 플린트(David Flint)는 난폭한 레바논계 갱 집단들이 크로놀라 해변가로 몰려가 인명 구조원을 폭행함으로써, 젊은 호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맞섰을 뿐 호주 언론이 이런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알란 존스를 옹호했다.

알란 존스와 오랜 동안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존 하워드(John Howard) 수상은 "나는 알란 존스가 호주 사회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대변해 주는 탁월한 방송인이다"라며 Alan Jones를 옹호했다(*The Australian*, 11 April 2007). 또한 야당 당수인 케빈 러드(Kevin Rudd) 역시 "알란 존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라며 알란 존스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비추었다. 양 당의 총수가 ACMA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금년 말 연방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호주 앵글로 색슨 주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란 존스를 쓸데없이 비난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저의에서 나온 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ACMA의 판결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CMA가 심의한 안건이 모두 8건이었는데 이 중 다섯 건은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그가 방송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인종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월 6일 방송된 내용

중 한 청취자가 '그 녀석들 중 한 명만 쏘면 전부 도망갈 것'이라 하자 진행자는 '네'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이에 대해 ACMA는 알란 존스가 웃으면서 답한 이 내용은 청취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대화를 종결하려는 의도였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12월 8일자 내용 중 진행자는 '이번 일요일은 레바논인들에게 보복하는 날이니 모든 호주인들은 크로놀라 해변가로 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프로그램 진행 중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이에 대해서도 ACMA는 호주 지역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소요 및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서 알란 존스가 폭력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ACMA가 발표한 내용은 불만 내용 중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힌 미약한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해 NSW(New South Wales)주 경찰청이 크로놀라 사태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사태 당시 2GB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이 인종 차별적이고,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여 폭동을 선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법을 적용하진 않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워드 수상과 야당 당수가 알란 존스를 옹호하는(즉 ACMA의 발표를 무시하는) 발언은 현재 보수 성향이 대체로 강한 호주 정치권의 저변에 아직도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의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자유연합당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은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강력한 대 테러전에 합세해 반 이슬람, 반 중동이라는 '마녀 사냥'에 집착해 왔는데 이런 이유로 그들의 정책을 방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지해 온 알란 존스를 보호해 주려한다는 견해도 있다 (Michaels, 2007).

사실상 9.11 테러 사태 이후 호주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 테러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워드 수상의 친미 일변도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내 무슬림 지도자 중 한 명인 셰익 엘힐라리(Sheik Taj el-Dene Elhilaly)는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반 호주적인 발언을 일삼아 호주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옷을 단정치 않게 입으면 성폭행 표적의 대상이 된다'며 호주에서의 이슬람교 차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모든 무슬림들이 이란이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정치권에서는 호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그런 반 호주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엘힐라리를 비난하였는데, 야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시민권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었고, 이민성 장관은 그가 호주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은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호주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는 엘힐라리의 발언은 호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권의 비난에 동참했다.

이런 모든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 볼 때, ACMA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은 9.11 테러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과의 공조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루퍼트 머독 소유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ACMA 발표 직후 동 신문은 사실을 통해 알란 존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고, ACMA의 결정이 호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를 뿌리는 계기라 힐난했다. 그러나 무슬림 지도자인 엘힐라리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언론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방송 주무 부처인 통신성의 헬렌 쿠난(Helen Coonan) 장관은 "자율 실천 강령 내용에 문제가 있

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것이다"(Coonan, 2007)라며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재검토 기간 중에 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 강령에 포함될 것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IV. 결론

ACMA는 2GB에 대해 취해질 제재 조치를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CMA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2GB의 방송권을 취소하거나 인가 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ACMA와 2GB 경영진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과금과 법적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상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강제력은 없지만 사전 검열제를 실시하여 2GB로부터 향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것으로 두 번째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인 방송 인가권에 관한 제재는 결국 방송사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ACMA의 위상이 너무 미미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란 존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과도한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번 ACMA보고서를 계기로 제기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호주의 방송 자율규제가 과연 얼마나 잘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범위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규제기구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는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 자율규제 하에서 ACMA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1990년대 말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캐쉬 포 코멘트(cash for comment) 사건 때 ACMA(당시 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미 잘 나타난 바 있다. 캐쉬 포 코멘트는 말 그대로 유명 방송인이 광고주나 스폰서로부터 그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의적인 코멘트를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2UE 라디오방송의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알란 존스와 존 로즈(John Laws)는 콰타스(Qantas) 호주 항공사, 시드니의 스타 시티(Star City) 카지노 등 특정 회사와 방송 홍보를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방송인이나 방송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었다.

이번 ACMA의 유죄 결정으로 호주 방송규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 호주의 방송은 당시 정부 규제 기관인 방송평의회(ABT: Australian Broadcasting Tribunal, ABA의 전신)의 통제 하에 법적 구속을 받아 왔다. 1992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들은 최소한의 통제와 함께,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그릇된 가정 하에 그간의 ACMA의 상업 라디오방송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왔으며, 방송사의 자율규정과 병행하여 방송위원회 통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전까지 정부의 방송통제를 경험한 바 있는 방송사들에게 1992년 이전에 가해졌던 것과 같은 정도의 통제가 재개된다면 이는 방송규제의 역행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력한 방송통제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ACMA의 상업 라디오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ACMA의 고민은 자율규제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간섭을 행할 것이냐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에 대해 ACMA가 얼마만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방송 규제의 핵심 관건이라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ABC-TV(2007). *Media Watch: Alan Moans*, 16 April. www.abc.net.au/mediawatch/transcripts/s1898662.htm (Accessed on 18 April 2007).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2006). *Investigation Report No.1485*, Sydney: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Bodey, M.(2007). 'Singleton Savages Watchdog', *The Australian*, 12 April.
- Bodey, M. & Kavelas, P(2007). 'Guilty Jones Attacks Media Watchdog', *The Australian*, 12 April.
- Day, M.(2007). 'There Must Be a Reckoning for Jones' Vitriol', *The Australian*, 12 April.
- Australian Press Council(2006). *Objects, Principles and Complaints Procedure*, Sydney: Australian Press Council.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04). *Codes of Practice and Guidelines*, Sydney: Commercial Radio Australia Ltd.
- Coonan, Helen(2007). *Media Release: Senator the Hon Helen Coonan, Minister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Canberra.
- Michaels, Fergus(2007). *Australia: Bipartisan Support for Media Instigator of Cronulla Race Riot*,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ICFI), 18 April 2007. www.wsws.org/articles/2007/apr2007/acma-a18.shtml (Accessed on 26 May 2007)
- The Australian*(2007). 'Howard Defends Outstanding Jones', 11 April.